

의안번호	2217828
의 퇴 인	김장겸의원
회 답 일	2026.9.15.
추계번호	26D175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제23호의3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침해사고조사관으로서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함	의무규정
2	안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관할)제20호의3호 신설	제5조제23호의3에 규정된 자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의2, 제71조 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제73조제6호의 범 죄 ¹⁾ 를 수사 관할로 함	의무규정

-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8조의4(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침해사고의 발생 여부,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망의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존을 명할 수 있다.
- 제70조의2(벌칙)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1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13. 제48조제4항을 위반하여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유포한 자
-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8조의4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관련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제23호의3 신설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관할) 20호의3 신설	

2. 상세 사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침해사고조사관에게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특별사법경찰 직무 부여(안 제5조 및 제6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2217829)²⁾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침해사고조사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제청하고, 근무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한 자에게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부여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침해사고조사관은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 정보통신망 침입, 정보통신망 장애 유발, 보호·인증절차를 우회하는 프로그램 설치·전달·유포 등의 범죄에 대해 수사 권한을 가짐
 - 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되는 경우 직무교육 실시, 수사·증거수집 활동을 위한 경비, 수사활동비 지급, 장비·시설비, 전산시스템 구축·운영비 등 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됨
- 다만, 개정안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되는 공무원의 수, 수사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비, 교육훈련비,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비 등 예산규모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현시점에서 추계가 곤란함

2) 김장겸의원 대표발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8조의7(침해사고조사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조사·분석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침해사고조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특별사법경찰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표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별사법경찰 관련 예산: 2026년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예산
AI 활용 미인증 기자재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AI 활용 미인증 기자재 온라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시스템 구축 ISP 수립	76
전파방송행정지원	전파방송 정책 업무활동 지원	사법경찰관 특정업무 수사활동비	171.6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년 사업설명자료 II-1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보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임지원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임지원	02-6788-4664	img1@nabo.go.kr